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6. 9. 14.(월) 16:00
(지 면) 2026. 9. 15.(화) 조 간

고려인 이주 역사 기록 바다 건너 품는다 한-카자흐스탄 기록 협력 재정비

- 한-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, 기록관리 업무협약 10년 만에 재체결
- 변화된 기록관리 수요 반영해 협약 내용 보완, 실무 협의로 단계적 이행
- 고려인 이주사 등 양국 관련 역사 기록의 발굴·보존 협력

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(원장 이용철)은 9월 14일(월)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에서 카자흐스탄 대통령기록보존소와 기록관리 분야 업무협약(MOU)을 재체결했다.

이번 협약은 2016년 양 기관이 처음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10년 만의 재체결이다. ‘한-중앙아시아 정상회의’를 계기로 양 기관은 그동안 변화한 기록관리 환경과 협력 수요를 반영해 기존 협약 내용을 보완했다. 14일 열린 체결식에서는 이용철 국가기록원장과 알리야 무스타피나(Aliya Mustafina) 카자흐스탄 대통령기록보존소장이 양 기관을 대표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.

>> 10년 만의 협력 기반 재정비, 전자기록·디지털 보존 등 실질적 협력 분야 확대

카자흐스탄 대통령기록보존소는 대통령 관련 기록과 국가의 주요 역사 기록을 관리·보존하는 기관으로, 국가기록원과는 2016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국제 학술토론회(세미나) 참가와 전자기록 관리 관련 교육 등 지속해서 교류를 이어왔다. 이번 재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기존의 협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록관리와 역사 기록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장했다.

이번 협약에는 ▲기록관리 관련 법령·정책·표준·간행물 등 자료 및 사례의 공유, ▲양국의 역사·문화 관련 기록정보의 발굴 및 교류, ▲기록관리 분야 교육·세미나 참여, ▲디지털 기록관리와 기술 협력, ▲양국 소장 기록물의

국제적 가치 확산을 위한 공동 협력 등이 담겼다. 양 기관은 협약에 포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각 기관의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고, 구체적인 협력사업은 앞으로 정기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.

>> 고려인 이주사 등 양국 역사 기록 공유와 중앙아시아 기록 협력 지평 확장

특히, 국가기록원은 카자흐스탄 대통령기록보존소가 소장한 고려인 이주 관련 기록물을 수집해 온 기존 성과에 더해, 이번 재체결을 계기로 고려인 이주사 등 관련 역사 기록물의 소재·목록 공유를 넓히고 디지털화와 사본 교환 등 후속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.

한편, 행정안전부는 ‘한-중앙아시아 정상회의’를 계기로 카자흐스탄 문화정보부와 기록관리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이를 계기로 카자흐스탄과의 기록관리 협력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.

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“이번 업무협약 재체결은 지난 10년간 쌓아온 양국 간 기록관리 협력의 기틀을 디지털 시대에 맞춰 다지는 뜻깊은 결실”이라며 “고려인 이주사 등 소중한 역사 기록의 발굴과 전자기록 관리 기술 교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기록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	책임자	과장	김정은 (042-481-6247)
		담당자	연구관	김성겸 (042-481-6311)



대한민국 국가기록원과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기록보존소 간 기록관리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

대한민국 국가기록원과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기록보존소(이하 총칭하여 “양측”, 개별적으로 “일방”이라 한다)는,

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 오랜 우호 관계와 양국의 역사·문화유산 보존에 있어 기록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

상호 이익을 위하여 기록물, 기록관리, 기록유산, 디지털 보존 및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며,

각국의 현행 법령에 따라,

다음과 같이 양해하였다.

제1조 목적

이 양해각서는 평등, 상호 존중, 호혜 및 상호 이익의 원칙에 기초하여 기록물, 기록관리 및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양측 간 협력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협력 내용

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다.

- 기록물 및 기록관리 관련 법령, 정책, 표준, 간행물, 기록자료 및 모범사례의 교환
- 관련 기록의 조사·발굴을 위한 협력을 포함하여 양국의 역사, 문화 및 기록물과 관련된 디지털 사본 및 메타데이터의 교환
- 교육, 워크숍, 세미나 또는 그 밖의 역량강화 활동을 통한 기록물 및 기록관리 분야의 지식과 경험 교환
- 디지털 전환, 전자기록관리, 디지털 보존 및 클라우드 기반 기록관리시스템을 포함한 디지털 기록관리 및 관련 기술 분야의 협력
- 양국이 공유하는 기록유산의 국제적·지역적 인정을 위한 기회 모색에 관한 협력
- 각자의 권한 범위에서 양측이 서면으로 공동 결정하는 그 밖의 협력

제3조 이행

1. 이 양해각서는 각국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, 그리고 양측의 인적·재정적 자원의 가용 범위 내에서 이행한다.
2. 필요한 경우 양측은 이 양해각서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의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4조 법적 성격

이 양해각서는 국제법 또는 각국의 국내법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.

제5조 비밀유지

양측은 이 양해각서의 이행 과정에서 교환되는 비공개 정보에 대하여 각국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비밀을 유지한다. 해당 정보는 이를 제공한 일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.

제6조 이견의 해결

이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견은 양측 간 협의와 상호 이해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.

제7조 발효, 유효기간, 개정 및 종료

1. 이 양해각서는 양측이 서명한 날부터 발효한다.
2. 이 양해각서는 최초 5년간 유효하며, 어느 일방도 현 유효기간 만료일 최소 3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, 이후 5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.
3. 이 양해각서는 양측의 서면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. 해당 개정은 이 양해각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, 양측이 합의하여 정한 날부터 발효한다.
4. 어느 일방도 상대방에게 최소 3개월 전에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양해각서를 종료할 수 있다.
5. 이 양해각서의 종료 또는 만료는 양측이 달리 공동 결정하지 않는 한, 이미 공동 결정되어 진행 중인 활동이나 사업의 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이 양해각서는 2026년 9월 14일 성남에서 한국어, 카자흐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되었으며, 모든 언어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.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.

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을
대표하여

원장
이용철

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기록보존소를
대표하여

소장
알리야 무스타피나